

영국 사례 1

**공익적 목적과 관련해 수집된 미성년자의 초상을 보도하면서 사생활 침해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국 PCC는 “‘함정수사가 함정’이라는 주장” 제하로 『더 패킷』지가 2006년 11월 1일에 보도한 기사와 사진에 대해 콘월 지역 위원회의 법률 사무부장인 리처드 윌리엄스가 제기한 불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만신청인은 기사가 아동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윤리강령 제3조(사생활 침해)와 제6조(아동보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만신청인은 기사에 실린 사진의 경우 윤리강령 제10조(은밀한 장비와 속임수 사용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기사는 “우리 상점 직원이 Trading Standards의 수사관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린 트루로의 한 상점주의 말을 인용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문제의 기사에는 상점주가 “외모로 봐서는 적어도 18세 이상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보낸 CCTV 화면이 게재되어 있다.

불만신청인은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윤리강령 제3조와 제6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특별한 공공의 관심사’가 아니므로 16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관련된 보도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불만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더 패킷』지는 “상점이라는 곳은 대중의 접근이 항상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사생활에 대한 윤리강령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반박하고 “상점을 방문하는 손님들은 기본적으로 타인들에게 노출되고 감시카메라에 찍힌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이며 또한 사진 자체도 어떠한 기밀의 정보도 담고 있

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문사 측은 “무엇보다도 이 과정은 점원이 법을 위반하는 모습을 포착하려는 위원회 소속 경찰들의 ‘함정수사’를 보고자 하는 대중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고 이번 수사에 동원된 청소년의 부모 역시 자신의 아이가 감시카메라에 찍히고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만신청인은 “자발적으로 지원한 소년의 사진을 게재한 것은 적당하지 않고 소년의 권리와 대중의 관심사의 균형을 맞추는데도 실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불만신청인은 ‘대중들에게 소년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 지 확인할 수 없다’는 소년의 부모의 말을 인용해 진술문을 마쳤다. 불만신청인은 또한 “PCC는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 소년의 신분을 항상 보호해야 하며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경찰이지 소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문사 측은 이 사건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웹사이트상의 사진은 비공개하기로

하였다.

PCC는 먼저 윤리강령 제3조와 관련해 판단을 하면서 이 사건이 보통 사건과 다른 매우 특이한 경우라고 밝혔다. 보통의 경우, 작고 조용한 상점에서 몰래 찍히고 동의 없이 게재된 개인의 사진은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PCC는 밝혔다. 그러나 PCC는 이번 경우는 상점의 직원들이 18세 이하의 사람에게 주류를 판매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수사당국이 의도적으로 15세의 미성년자를 동원했다는 점이 다르다고 보았다.

PCC는 윤리강령 제3조에 관한 불만내용을 기각하면서 그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이 행동은 완전히 사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수사당국에서 법정으로 갈 수 있는 문제를 조사한 것이고 이는 같은 상황의 보통 손님에 대해 적용되는 사례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PCC는 판단했다. 둘째, 소년의 외모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은 상점주인의 공식적인 불만이 제기되고 나서 사회의 논란거리가 되어왔기에 대해서 대중들은 논쟁의 사실을 알만한 권리가 있다고 PCC는 보았다. 셋째, PCC는 소년에게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그의 이름도 드러나지 않았고 불만신청인의 주장대로 이 기사에

실린 사진이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인정한다면 이는 문제의 상점주인이 대중에게 자유롭고 공정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PCC는 윤리강령 제6조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PCC의 윤리강령 개념으로 볼 때 기사에 실린 사진의 주제가 소년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PCC는 이번 일이 소년의 사생활

이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기사에도 해당 소년이 개인적으로 잘못을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PCC는 윤리강령 제10조가 몰래카메라를 통해 정보를 얻거나 이를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이번 기사는 상점의 CCTV에 찍힌 장면을 인용한 것이며 이를 제10조를 근거로 판단해 볼 때 이러한 카메라를 ‘숨겨져 있는’ 카메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 영국 사례 2

### 사적인 공간에서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해 공표했다면 사생활 침해로 인정할 수 있다

영국 PCC는 『헬로!』지가 지난 2006년 8월 29일에 게재한 기사에 대해 엘 맥퍼슨이 제기한 불만을 인정했다. 불만신청인은 문제의 기사가 그녀와 그녀 자녀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PCC 윤리강령 제3조와 제6조를 위반했다면 PCC에 불만을 제기했다.

불만신청인은 변호사를 통해 불만신청인이 개인 소유의 별장과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 당했다고 주장했다. 불만신청인은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의 사진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헬로!』지는 불만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사진 촬영을 할 때 개인 소유가 아닌 공공 해변에서 찍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잡지사는 “사진 촬영에 이용된 렌즈가 보통의 것인지 망원렌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장의 사진에서 불만신청인이 사진기자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 불만신청인이 파파라치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잡지사 측은 “하지만 촬영된 사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웹사이트에도 게

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잡지사의 편집장은 사과의 편지를 보내겠다고 제안했고 앞으로 불만 신청인의 아이들 사진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PCC는 불만신청인이 개인적인 휴가를 위하여 고립된 섬의 개인 별장에서 지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 사실을 비중있게 고려했다. PCC는 불만신청인과 불만 신청인의 자녀들이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잡지사의 설명을 인정하지 않고 윤리강령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한 PCC는 불만신청인이 제기한 윤리강령 제6조(미성년자 보호)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PCC는 사진의 주제가 불만신청인의 아이들의 삶에 관련된 것은 아니며 사진 자체에 자녀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나왔고 촬영의 악의가 없으며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

신청에 대한 답변으로 신문사는 이를 뒤, “주지사가 ‘입장을 바꿨다’”며 “지구 온난화에 대해 주지사의 입장이 확실치 않다”고 두 번째 기사를 보도했다. 또한 신문사는 불만신청인의 입장과 함께 불만신청인과의 인터뷰 전문을 게재하고 불만신청인에 대한 자연보호단체장들의 비판문도 같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불만신청인과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주 내각 사무소는 기사의 정확성, 사실 확인, 적당한 정보도 기사를 내는 것에 대해 신문사가 언론평의회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주 내각 사무소는 인터뷰가 지구 온난화를 이겨내자는 내용이었지만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제목과 코멘트들로 인해 불만신청인인 주지사가 단순히 “지구 온난화가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주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만 말한 것처럼 오해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지는 이에 대한 반박으로 “인터뷰의 최우선적인 주제는 무공해 에너지 개발 작업이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주의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고 밝히고 “첫 번째 기사의 제목이 ‘지구 온난화가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주의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

## 호주 사례 1

### 헤드라인과 주요 문장만 읽는 보통의 독자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기사를 작성한 것에 대한 불만은 인정된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지가 지난 2006년 11월 4일에 보도한 기사 중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주(州) 알란 카펜터 주지사(불만신청인)와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불만과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주 내각 사무소가 정정보도에 대한 신문사의 대응법에 대해 제기한 불만을 인정했다.

문제의 2006년 11월 4일자 기사의 헤드라인은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주의 주지사는 ‘지구 온난화는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주에 좋은 일이다’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으며 부제목은 “웨스트 오

스트레일리아주의 주지사인 알란 카펜터는 ‘지구 온난화가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주에 좋은 것이 되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문제의 기사는 불만신청인이 긍정적인 태도로 “세계가 지구 온난화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며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주가 그 중심에 설 것”이라고 말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문제의 기사는 불만신청인의 발언 내용을 부연설명하는 그래픽을 게재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가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주에게 좋은 일’이라고 한 적이 없다”는 불만신청인의 불만

다면 주지사가 불만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불만신청인의 불만을 인정했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전체 내용을 읽는 독자는 헤드라인과 코멘트들이 지구 온난화를 극복하자는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주가 득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함축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헤드라인과 첫 번째 기사의 주된 문장들만 보는 보통의 독자들은 다른 내용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불만신청을 받아들였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두 번째 기사 역시 첫 번째 기사와 같이 주지사의 답변에 대해 오해할 소지가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불만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

호주 사례 2

**사실에 대하여 정확성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잘못된 기사를 보도했다면 그에 대한 불만을 인정할 수 있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더 에이』지가 2006년 12월 13일자 “나쁜 옵션” 제하로 보도한 기사에 대해 미셸 다운스가 제기한 불만 신청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문제의 기사는 ‘다이어리 섹션’에 게재되었는데 이 섹션은 가십(gossip)을 주로 소개하는 섹션으로 기사들의 내용이 대부분 의견들로 이루어져 있다.

문제의 기사는 고(故) 피터 브룩의 전 부인인 불만신청인이 『뉴 아이디어』지에 “결혼 생활 중 피터 브룩이 나를 폭행했었다”고 밝힌 사실에 대해 (고(故) 피터 브룩의 친구의 시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해당 기사에서 고(故) 피터 브

룩의 친구는 불만신청인이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 것을 비판했다. 문제의 기사는 고(故) 피터 브룩의 친구의 발언을 직접 인용한 부분을 제외하면 “이상하고 불품없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뉴 아이디어』사로 서둘러 갔다”는, 신문사 측이 불만신청인에 대해 직접 언급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 이 두 가지에 대해 불만신청인은 호주 언론평의회에 불만을 제기했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독자들이 무엇이 사실이고 견해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어떤 정보가 사실로서 제공되었다면 신문사에

서는 자신들이 보도한 것에 대해 그 정확성을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이상한”이나 “불품없는” 같은 단어의 선택이 ‘견해’임을 확연히 보여주며 독자들이 이를 견해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호주 신문평의회는 이에 대한 불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호주 언론평의회는 문제의 기사가 “불만신청인이 자신의 남편이 사망하자 ‘서둘러’ 잡지사로 달려갔다”는 내용을 사실로 기록하고 있으나 불만신청인은 ‘화이트 리본 데이’ (여성폭력반대의 날)에 맞추어 이를 폭로하려고 자신의 남편이 죽기 전부터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화이트 리본 데이’는 매년 11월 25일이고 『뉴 아이디어』지의 기사는 2006년 11월 17일에 보도되었음을 볼 때 호주 언론평의회는 불만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신문사가 화이트 리본 데이 관계자나 『뉴 아이디어』지 그리고 불만신청인 본인에게 직접 미리 확인했으면 불만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사는 사실로 기록된 정보에 대하여 검토를 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불만신청은 인정되었다. □